

경조금 운영 규칙

제정 2021. 06. 09.

개정 2021. 12. 21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남양주시체육회 경조금 운영규정(이하“규정”이라한다)에 의거 임직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경조금 집행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조(지급대상) ① 체육회 이사회비(이하“임원회비”라 한다.) 경조금 지급대상은 본회 임원 및 체육회 직원으로 한다. 다만, 본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(대한체육회, 시·도체육회, 시·군·구체육회 등 체육관련 단체)의 임·직원에게도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 2021. 12. 21.)

② 가입단체회비(이하“회원단체회비”라 한다.) 경조금 지급 대상은 본회 회원단체(종목단체, 읍·면·동체육회) 회장 및 사무국장으로 한다. (개정 2021. 12. 21.)

제3조(운영예산) 경조금은 임원회비 및 회원단체회비로 운영하며 매년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. (개정 2021. 12. 21.)

제4조(경조금지급기준) ① 경조금 지급은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확인 가능한 날(청첩, 부고 등)로 한다.

② 경조사 시 별표1에 정하는 경조금을 적용하여 지급한다.

③ 경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기타경조)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경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심의 결정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경조금 지급기준
(제4조관련)

구 분	지급기준(대상)	지급액(원)
결 혼	· 본인 및 자녀	200,000 및 화환
사 망	· 본인 및 배우자 · 본인 및 배우자 부모	200,000 및 화환, 근조기
개 업	· 본인 창업	화분(화환) (100,000 범위내)
회갑, 고회연	· 본인	화분(화환) (100,000 범위내)
입원	· 본인 ※경·중에 따라 지급	300,000
퇴 임	· 본회직원 퇴임 및 전출 (1년 이상 근속자)	200,000
발 령	· 전임, 전출, 승진	화분(화환) (100,000 범위내)
기 타	· 훈장, 포장(대통령상),출산 등 慶事	200,000 및 화분(화환)

※근조기 : 謹弔 / 南楊州市體育會